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3 선고 2020가합161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2. 11 선고 2021나202572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3 선고 2020가합1610 판결

전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종결 2021. 5. 12.

판결 선고 2021. 6. 23.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

① 원고에게,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분의 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

1978. 12. 26. 접수 제11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분의 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. 12. 4. 접수 제186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8분의 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. 5. 15. 접수 제7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6. 8. 합의와 어머니 묘소 성역화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 B는 부 D(1978. 12. 1. 사망)과 모 E(2004. 8. 6. 사망) 사이의 형제들이고,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은 D의 소유였는데, D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78. 12. 26. 접수 제11274호로 1978. 12. 1.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B(14분의 6 지분), E(14분의 2 지분), 원고(14분의 4 지분), F, G(각 14분의 1 지분)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다.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소유였던 14분의 6 지분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4. 12. 4. 접수 제18661호로 2004. 11. 30.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, E의 소유였던 14분의 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9. 5. 15. 접수 제7277호로 2004. 8. 6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(28분의 2 지분), F(28분의 1 지분), G(28분의 1 지분)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(28분의 16 지분)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9. 1. 15. 접수 제7281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3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과 판단

가. 원고는, ①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상속재산인데, 피고들이 H(피고 B의 처이자 피고 C의 모)와 공모하여 1990. 10. 21. E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E는 그 후 유증으로 2004. 8. 6.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, 피고들은 상속결격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, ②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추모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, ① 갑 제7, 28, 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가 1990. 10. 21.경 전흉부와 좌완부에 자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, 이러한 사정 및 갑 제8 내지 25, 36, 3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H와 공모하여 E를 살해하려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E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②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형제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E의 추모사업에 사용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, 피고들이 그 합의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, 추모사업에 관한 합의에서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이원석

판사최석진

판사선민정

별지